



대한민국 자치1번지  
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



#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분양안내



기업인 여러분을  
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!



입주업체 편의를 위한  
수요자 맞춤형 산업단지



2851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(문화동)  
충북도청 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헬스팀  
TEL (043) 220-4621~3 FAX (043) 220-4619  
<http://www.chungbuk.go.kr/>



29032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 
경제정책실 신산업육성팀  
TEL (043) 730-3371~3 FAX (043) 731-2913  
<http://www.oc.go.kr/>



28537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5  
한화생명 6층 투자유치부  
TEL 1899-9485 FAX (043) 210-9139  
<http://www.cbdc.co.kr>



#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BEST VISION

- 오송 의약바이오, 제천 한방바이오,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바이오 삼각망 구축
- 옥천 의료기기단지 확장 개발, 의료기기 기업 추가 유치를 통한 옥천 의료기기밸리를 특화·발전



## 6대 신성장 동력산업 바이오 산업

**옥천**  
의료기기밸리

- 제2의료기기단지조성
- 융복합의료기기 연구개발 지원

**오송**  
바이오밸리

- 첨단의료복합단지 완성
-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
- 확장품연구개발센터

**괴산**  
유기농 밸리

- 2015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
- 유기식품산업단지조성

**충주**  
당뇨바이오밸리

- 국민 모두가 건강한 대한민국
-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조성
- 예방·관리, 산업인프라 확충

**제천**  
한방바이오밸리

-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
- 한방바이오기업 연구타운

# 헬스케어 관광산업 중심의 의료기기밸리

오송[바이오밸리] ↔ 제천[한방바이오밸리] ↔ 옥천[의료기기밸리]을  
잇는 바이오 산업벨트 구축, 충북의 중심 바이오 산업축 형성



## [사업개요]

- 위치 :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서대리, 가풍리, 구일리 일원
- 사업기간 : 2015년 ~ 2019년
- 사업규모 : 351,661㎡ (산업시설용지 242,709㎡)
- 분양예정가 : 39만원/3.3㎡ (단, 정산시 조정)
- 유치업종 : 의료기기제조업, 의료용품 및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등
- 사업시행자 : 옥천군, 충북개발공사

## [사업위치]

- 경부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육상물류의 중심(옥천C)
- 경부선(옥천역) 및 경부고속철도(대전역)이 지나가는 철도교통의 중심
- 청주국제공항을 통한 첨단제품의 수출입이 매우 편리(북경, 선양, 항저우)
- 서울172km, 평택항130km, 세종59km, 청주50km, 대전18km



# 탄력적인 유치업종 배치 (맞춤형도 가능)

기업인들의 더 큰 성공을 위하여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 
입주를 정성껏 지원하겠습니다.

## [주요유치업종 및 배치계획]

구 분		면적(㎡)	구성비(%)
합 계		242,709	100.00
의료기기 관련산업	C21	95,770	39.46
	C26		
	C27		
	C28		
	C29		
바이오 식품 및 가공(포장) 산업	C10	88,381	36.41
	C11		
	C16		
	C17		
	C22		
	C23		
C33	58,558	24.13	
기타 (유치제한업종 : C19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,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)			



## 의료기기전략산업클러스터센터 및 의료기기보육센터 인접 위치

업종의 그룹화로 탄력적인 유치업종 배치 수요자 맞춤형 부지공급 가능

### [범례]

■ 의료기기관련 ■ 바이오식품 및 가공(포장)산업 ■ 기타

# 업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부지공급 가능

## 토지공급시기

- 토지사용예정일 : 2019. 상반기
- 토지소유권이전예정일 : 2020. 상반기

### [토지이용계획]

구분	면적(m <sup>2</sup> )	구성비(%)
합계	351,661	100.0
산업시설용지	242,709	69.0
지원시설용지	5,167	1.5
공원	24,515	7.0
녹지	28,487	8.1
주차장	2,164	0.6
유수지	6,515	1.9
배수지	1,571	0.4
도로	40,533	11.5

### [획지계획]

#### 가. 산업시설용지

구분	면적(m <sup>2</sup> )	구분	면적(m <sup>2</sup> )	구분	면적(m <sup>2</sup> )
산업1-1	9,958	산업3-7	3,435	산업5-7	4,934
산업1-2	9,984	산업3-8	4,702	산업5-8	4,835
산업2-1	5,231	산업3-9	4,524	산업6-1	4,129
산업2-2	5,566	산업3-10	3,908	산업6-2	4,138
산업2-3	5,317	산업3-11	3,262	산업6-3	3,537
산업2-4	7,410	산업3-12	3,035	산업6-4	3,760
산업2-5	6,335	산업4-1	16,287	산업6-5	4,400
산업2-6	5,521	산업4-2	10,782	산업7-1	5,278
산업3-1	3,197	산업5-1	5,115	산업7-2	5,654
산업3-2	3,396	산업5-2	5,371	산업7-3	7,576
산업3-3	3,834	산업5-3	5,393	산업8-1	12,981
산업3-4	3,914	산업5-4	4,963	산업9-1	12,265
산업3-5	4,254	산업5-5	4,747	산업9-2	11,788
산업3-6	3,227	산업5-6	4,766	계	242,709

#### 나. 지원시설용지

구분	면적(m <sup>2</sup> )
지원1-1	767
지원1-2	767
지원1-3	767
지원2-1	956
지원2-2	850
지원3-1	1,060
계	5,167

#### 다. 주차장

구분	면적(m <sup>2</sup> )
주차장1	2,164

#### 라. 배수지

구분	면적(m <sup>2</sup> )
배수지1	1,571



• 유망 의료기기 창업기업을 위한 임대공장 (보육실 18실, 멸균실 6실)



• 의료기기 제조기업을 위한 임대공장 (보육실 10실, 멸균실 3실)

## 지방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



### 가.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

대 상		감면내용	현소재지	일몰기한
국 세	공장	•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 연기, 그 후 5년간 분할 납부	대도시	2020년말
	본점 또는 주사무소		수도권 과밀억제권역	2020년말
	2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(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, 전부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)	• 법인세 7년간 100%, 그 후 3년간 50% 감면	수도권 과밀억제권역	2020년말
	3년이상 영위한 공장 또는 주사무소	• 법인세 7년간 100%, 그 후 3년간 50% 감면	수도권 과밀억제권역	2020년말
지 방 세	본점 또는 주사무소	• 취득세 면제 • 재산세 5년간 100%, 그 후 3년간 50% 감면	수도권 과밀억제권역	2018년말
	공장	• 취득세 면제 • 재산세 5년간 100%, 그 후 3년간 50% 감면	대도시	2018년말

### 나. 창업·신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(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추진 중)

대 상		감면내용	현소재지	일몰기한
국 세	공장	• 법인세(소득세) 3년간 100%, 그 후 2년간 50% 감면	제한없음	2018년말
지 방 세	공장	• 취득세, 재산세 50% 감면	제한없음	2019년말

### 다. 기타 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 감면

대 상		감면내용	현소재지	일몰기한
지 방 세	공장	• 취득세 75% 감면, • 재산세 5년간 75% 감면	제한없음	2019년말

\* 상기 지원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충북개발공사 투자유치부(043-210-9144)로 문의 바랍니다

## 지방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



구분	수도권 지방 이전 투자기업 지원	지방 신·증설 투자기업 지원						
지원기준	①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할 것 ②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할 것 ③ 기존사업장(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)의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일 것 ④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 소재한 본사, 공장,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 ⑤ 수도권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 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⑥ 투자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⑦ 투자금액이 10억원(대기업은 300억원) 이상일 것 ⑧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할 것	①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 ② 기존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일 것 ③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광역 협력권산업, 주력산업, 지역집중유치업종,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, 첨단업종에 해당할 것 ④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10%(최소 10명) 이상일 것 - 다만,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(50명 이상), 대기업(100명 이상) 가능 ⑤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- 지식서비스산업(투자금액 5억원 이상), 대기업(투자금액 300억원 이상) ⑥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						
지원기준 특례	① 신규 고용인원수에 따라 설비투자 금액의 지원 비율을 가산 ② 지방투자기업이 광역협력권산업, 주력 산업, 지역집중유치업종,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,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설비투자금액의 지원 비율을 2% 가산	① 신규 고용인원수에 따라 설비투자 금액의 지원 비율을 가산						
지원대상 업종	수도권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 부동산 관련업, 소비성서비스업, 건설업은 제외 (건설업 중 제조업 영위사실 입증 및 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시 가능)	광역협력권산업, 주력산업, 지역집중유치업종,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, 첨단업종						
지원내용	① 입지 : 토지매입가격의 40% 이내 (기존사업장 면적 및 투자대상부지 매입단가에 따라 금액인정범위 상정) ② 설비투자 : 투자금액의 24% 이내	① 입지 : 미지원 ② 설비투자 : 투자금액의 24% 이내						
지원비율	대기업    중견기업    중소기업	대기업    중견기업    중소기업						
지원 우대지역	입지	0%	20%	40%	0%	0%	0%	
	설비	11%	19%	24%	11%	19%	24%	
지원한도	기업당 국비지원 60억원 한도(지원범위 초과시 위원회 심의 필요)							
지원 시기	입지	착공신고 확인 후 100%					미지원	
	설비	① 1차 : 착공신고 확인 후 70% ② 2차 : 정산완료 후 30%					좌동	

\* 상기 지원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충북개발공사 투자유치부(043-210-9144)로 문의 바랍니다